

# 공공구매시 우선구매 곤란 사유

부구청장 방침-159호[재무과-5711(2013.3.4.)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촉진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하여 전부서의 구매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부서에서는 물품 구매시 중증장애인기업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구매 곤란시 사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매품목 및 수량: LED보안등기구 162개

2. 우선구매 곤란 사유

구 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19개소)	사회적기업생산품 (생산시설 1,184개소)	비 고
가) 생산품 유무	무	무	
나) 생산품이 있으나 구매가 곤란한 사유	- 생산품목 없음 -		

※ 생산 시설의 생산품이 없는 경우엔 가)항에 “무”를 기재하고, 생산품이 있으나 구매가 곤란한 경우엔 가)항에 “유”를 기재하고 나)항에 구체적사유를 기재

구매담당: 직 공업6급 성명 정찬재 (인) (☎ 행정 5785 )

2015. 04. .

토 목 과